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633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법률안 중 2건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941	이수진의원	2026.5.13.	2026.9.11.
	20898	이수진의원	2026.8.28.	「국회법」 제58조제4항 에 따라 소위 직접회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944	이수진의원	2026.5.13.	2026.9.11.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9. 17.)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되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보호자가 제도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에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나.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질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7조).

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출생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되, 아동수당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을 기준으로 함(안 제10조).

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의2제3항).

마.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10조의2제4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아동수당의 지급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및 신청방법 등”을 “등”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를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이하 “지급결정전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로,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을 “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급아

동”을 “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으로, “아동수당”을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을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를 “아동수당을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의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을 결정하기 전의 아동수당은 최초 아동수당 지급 시 일시에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을 “출생아동”으로, “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그 밖에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 및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후단 중 “지급 신청”을 “지급 결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중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 조사·질문, 지급 결정,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중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이 있었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u> <u>등</u>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u>신청방법 등</u>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u>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u> <u>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u> <u>② 삭제</u> <u>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u>	<u>제2장 아동수당의 지급 등</u>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 ----- ----- ----- ----- ----- <u>등</u>----- -----. ②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8. (생략)

③ ~ ⑤ (생략)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

하지 아니한다.

② -----

-----지급결정
전아동의 보호자-----

-----.

-----.

1.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제1항에 따른-----.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을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의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을 결정하기 전의 아동수당은 최초 아동수당 지급 시일시에 지급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
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
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
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
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
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 ~ ⑤ (생략)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
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
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
동수당을 지급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지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출생아동-----

-----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및 그 밖에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 및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

-----.

1. -----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u>지급 신청</u>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 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 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 (起算)한다. 2.·3. (생략) ② · ③ (생략)	-----. -----<u>지급 결정</u> ----- ----- ----- ----- ----- ----- -----. 2.·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